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변경 (안 제3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위원 구성 요건과 상충되는 부분 수정

○ 지원대상 추가(안 제4조)

- 공동주택 외벽 도색,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비용

○ 자구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 제13조(설치), 제23조(설치) 제목 변경

⇒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지보수”를 “유지·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및 그 밖의”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공공 시설”을 “주민 공동시설”로 한다.

2. 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등 유지·보수
6. 상하수도·가스·소방·승강기 시설의 유지·보수
8. 공동주택 외벽 도색
9.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제6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를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설치)”를“(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를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6.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제23조의 제목“(설치)”를“(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u></p> <p>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u>제5호</u>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17.03.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단지 내 주관통도로 및 가로 등 유지보수</u> 3. (생략)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u>유지보수</u> 5.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u>그 밖의 방수공사</u> 6. <u>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용 부분에 한정한다)</u> 7. (생략) <p><u><신설></u> <u><신설></u></p>	<p><u>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u></p> <p>제4조(지원대상) ----- ----- ----- --- <u>제5호, 제6호 및 제8호</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단지 내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등 유지·보수</u> 3. (현행과 같음) 4. ----- <u>유지·보수</u> 5. ----- -- <u>등</u> ----- 6. <u>상하수도·가스·소방·승강기 시설의 유지·보수</u> 7. (현행과 같음) 8. <u>공동주택 외벽 도색</u> 9. <u>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u>

8.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17.03.27.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3.20.>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2. (생략)

3. 군 소속 관련 담당관·과장

④ ~ ⑥ (생략)

⑦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3조(설치) (생략)

10. -----

-- 주민 공동시설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실장·국장·과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제14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2. (생략)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생략)

5. 군 소속 관련 과장

<신설>

<신설>

④ (생략)

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

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현행과 같음)

5. ----- 실장·국장·과장

6.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④ (현행과 같음)

⑤-----

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3조(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

---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제24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군 소속 관련 담당관·과장

<신 설>

<신 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4. ----- 실장·국장·과장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기능)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관
한 사항

2. (생략)

법」 제56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